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
제출연월일 : 1996. 10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(1995. 12. 6 법률 제4993호) 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의 제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수방단에 대한 임무부여(안 제2조).

나. 수방단원의 임명 또는 위촉사항과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편성기준을 15인이상 50인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함(안 제5조).

라.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소집 및 해제 결과를 3년간 기록·보존하여야 함(안 제6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이천시수방단운영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이천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임무)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·정비
2.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
3.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
4. 법 제23조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
5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3조 (조직)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
2.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
3.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17세미만인 자 및 60세이상인 자
2. 고교생 및 대학생
3. 경찰관 및 군인
4.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

제4조 (단장)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.

②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.

제5조 (편성)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

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부 및 경계반 : 10인이하

가. 주민대피 유도

나.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

다.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

라.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

마.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

2. 복구반 : 30인이하

가.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·정비

나.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

다.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

라. 재해지구의 정리·정돈

3. 구호반 : 10인이하

가.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

나. 사망자·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

다.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

라.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

제6조 (소집해제 및 기록보존) ①시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 (기타 필요한 사항)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이천시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

편 성 현 황				소 집 현 황						비고
일련번호	직책	성명	주민등록번호	일시( )		일시( )		일시( )		
			주 소	소집사유	시간	소집사유	시간	소집사유	시간	